

4.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4.1.1.부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신고포상금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을 지급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5만원을 지급하고
-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회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시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하고 1인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규정하여 신고행위를 주 수입원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서울시, 2003. 9.18.)과 서울시 표준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2004년도의 예산으로 3,000천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3. 2.
 보고자 : 박창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 검토 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4. 2. 13.
-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2. 제정사유

-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2003년 7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 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내용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위원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5인 이내
 - 위원회구성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구의회의원, 공무원(각 3인 이내)
 - 민간전문가 (19인 이내)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위원회 기능
 -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자문
 -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법·영 또는 이 조례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과 다른 법, 영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자문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분과위원회 및 기능별 분과위원회 설치
 - 구 성
 - 위원 중에서 9인 이상 13인 이하
 - 2 이상의 분과위원회 가능
- 기타사항
 -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속기사가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수당 및 여비를 지급
-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기능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개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검토
-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기획단은 4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5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으로 구성
 -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 도시계획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
 -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분장, 복무 지도·감독
- 임용 및 복무 등
 -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고
 -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지급
- 발급수수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함
- 토지이용에관한의무등의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4.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으로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법, 영 또는 이 조례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과 「다른 법, 영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토록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안을 신중히 처리토록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도록 확대하고 4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5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신설하여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토록 신설한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은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3. 2.
 보고자 : 박창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검토 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4. 2. 13.
-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2. 제정사유

- 국민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징수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내용은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조례안 제4조)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조례안 제8조)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조례안 제15조)
-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조례안 제16조)
-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조례안 제17조)